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9일(화), 오후 4시 / 대회의실(9동 2층)
2. 소집통보 : 2024년 3월 28일(목)
3. 의원 참석 현황 : 의원정수 11명중 11명 참석
 (참석자 : 김, 열, 최, 송, 김, 박, 김, 안, 최, 한, 유경 등 11명)
 (불참자 : 없음)
4. 회의안건
 - 1)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 심의
 - 2) 202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자문
 - 3)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
 - 4) 유휴 교육용 시설 임대(안) 심의

5. 회의내용

[의 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인 참석하여 2024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금일 안건은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 심의부터 유휴 교육용 시설 임대(안)에 대한 심의까지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세부내용에 대해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 2024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어제 있었던 교무위원회 심의에서 학칙 제29조의 개정(안) 내용 중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 삭제하기로 하겠다고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 개정 사유	비고
제5조	학과명칭 변경	
제8조	직제 일부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제13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최신화	
제14조	휴업일 수업 가능 근거 명시	
제28조	학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전과 기회 추가부여	
제29조	추가 등록 가능 기간 명시	
제83조	학칙의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공시기간 단축	
제85조	학칙 개정을 위한 심의 단계 명시	

의 장 김, 열	부의장 한	평의원 김, 송	기 김, 송
-------------	----------	-------------	-----------

학칙 제5조 (실시학과 및 입학정원)												
현행						개정(안)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08	보건 과학부	환경안전보건과	20	보건 의료 학부 (1)	간호대학	간호학과	108	보건 과학부	입적학신부전학과	20
	임상병리학과	120		메디컬코스메틱과	20			임상병리학과	120		메디컬코스메틱과	20
보건 의료 학부 (1)	치기공과	100		임무부사관 (18급구조학전과)	30		보건 의료 학부 (1)	치기공학과	100		임무부사관 (18급구조학전과)	30
	치위생과	120		특정영우부사관과	40			치위생학과	120		특정영우부사관과	40
	심층영상과	20		경찰과학수사과	25			심층영상학과	20		경찰과학수사학과	25
	안경광학과	64		피난소방건설안전과	25			안경광학과	64		피난소방건설안전과	25
	바이오의학과	30	의료경영과	20	보건 의료 학부 (1)	바이오의학과	30	의료경영과	20			
보건 의료 학부 (1)	방사선과	120	컴퓨터정보과	20		보건 의료 학부 (1)	방사선학과	120	컴퓨터정보학과	20		
	보건의료영상과	80	영상영상학과	20			보건의료영상학과	80	영상영상학과	20		
	물리치료과	80	주원리디자인과	20			물리치료학과	80	주원리디자인과	20		
	음극구조과	80	방송콘텐츠과	20			음극구조학과	80	방송콘텐츠과	20		
	침습치료과	40	예술·체육지도과	20		보건 의료 학부 (1)	침습치료학과	40	예술·체육지도과	20		
유엔 케어 학부	뉴티케어과	40	반려동물과	60	유엔 케어 학부		뉴티케어과	40	반려동물과	60		
	신외골지과	40	교육학부	유아교육과			44	신외골지학과	40	교육학부	유아교육과	44
	장례지도과	40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장례지도과	40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호흡외식조리과	36	교양교육원	과학기초		-	호흡외식조리과	36	교양교육원	과학기초	-	
					합계						합계	1,502

학칙 제6조(조직)	
현행	개정(안)
① 본문생략 1.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인사팀, 정보기술팀, 대학평가, 인증센터를 둔다. 2. - 6. 생략 ② - ③ 생략	① 좌동 1. 혁신기획처에는 전략기획팀, 미래융합센터, 대학성과관리센터, 정보기술 팀을 둔다. 2. - 6. 좌동 ② - ③ 좌동

학칙 제13조(수업일수)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② 전제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충락 한다.	① 좌동 ② 전제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충락 한다.

학칙 제14조(휴업일)	
현행	개정(안)
① - ③ 생략 ④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 ③ 좌동 ④ 수업상 필요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칙 제28조(전과)	
현행	개정(안)
① - ③ 생략 ④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용할 수 있다. ⑤ 전과한 사람은 전과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과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외 기준은 충장이 따로 정한다.	① - ⑤ 좌동 ④ 삭제 ⑤ 전과한 사람은 전과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과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 장		부의장		평의원	
김	✓	한	✓	김	✓

학칙 제29조(등록절차)	
연행	개정(안)
학생은 매 학기초 중장이 공고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생은 기급회 중장이 공고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추가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학칙 제83조(공고기간)	
연행	개정(안)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학칙 제85조(심의)	
연행	개정(안)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연행	개정(안)
<신설>	이 학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5조와 제6조는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의 장] 발표가 끝난 뒤 각 의원에게 안건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며 먼저 질의하겠다고 하고 학칙 개정(안) 제28조 관련 전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학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제29조에서 필요한 경우 대학은보다는 대학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며 제85조 관련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보다는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로 기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다.

[교무팀장] 말씀 주신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 학과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시험을 보는 학과에서는 학과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묻다.

[교무팀장]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학칙 개정(안) 제29조와 관련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뒤에 이어서 단서조항으로 단, 대학은 필요한 경우로 표현하는 것이 더 부합하는 표현인 것 같다고 말하다.

[교무팀장] 제시하신 의견대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일정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 각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평의원] 의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재청하다.

[의 장] 첫 번째 안건은 상정된 내용에서 제28조, 제29조, 제85조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함을 말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말하다.

의 장	:	부의장	:	평의원	:
김	:	한	:	김	:

[전략기획팀장] 202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액, 기타교육부대수입 증대, 임의특정목적기금인출 감액 등의 사유로 2024학년도 본예산 대비 1,946,307천원 증액된 64,987,84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직원 인건비 감액, 시간 및 특별강의로 감액,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증액, 실험실습비 증액, 선급법인세 환급금 재적립을 위한 임의기금적립금 증액, 기계 및 집기비품매입비 증액, 건설가계정 증액 등의 사유로 2024학년도 본예산 대비 1,946,307천원 증액된 64,987,847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설명을 마칩니다.

[의 장] 발표가 끝난 뒤 각 의원에게 안건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나 일정 시간이 흘러도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어 202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문은 별다른 의견 없이 자문을 마친다고 말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말한다.

[총무팀장]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주요 집행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세입

구 분	2023외계연도	2022외계연도	전년대비 증감액	주요 집행 내용
동회급 수입	25,079,171천원	27,080,995천원	▼2,001,824천원	가수업료 24,749,041천원, 내담기수강료 330,130천원
전입 및 기부수입	14,841,388천원	14,199,148천원	▲642,250천원	기전입금 226,000천원, 내기부금 171,344천원, 대)국고보조금 14,344,053천원, 라)산학협력단전입금 100,000천원
교육부대수입	2,530,951천원	3,331,656천원	▼800,705천원	가수업료 174,920천원, 내)중명사용료 534,968천원, 대)기타교육부대수입 1,821,083천원
교육 외 수입	1,601,593천원	713,933천원	▲887,660천원	가예금이자 1,570,043천원, 내)기타집수입 31,549천원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7,346,509천원	8,620,678천원	▼1,274,169천원	가)기금인출 7,346,509천원
고정자산 매각	4,004천원	1,308천원	▲2,776천원	가)기계기구매각대 2,595천원, 내)집기비품매각대 189천원, 대)자랑은행구매각대 1,300천원
미사용 전기 이월지급	1,295,257천원	2,751,285천원	▼1,456,028천원	가)유동자금 9,883,440천원, 내)선급법인세, 미수금 등 기타유동자산 819,199천원, 대)예수금 342,603천원, 라)선수금 8,706,236천원, 미)기타유동부채 150,542천원
증액	52,698,967천원	56,699,006천원	▼4,000,039천원	가)교비회계 51,314,482천원, 내)약교기입회계 1,635,484천원 (내부거래 251,000천원)

○ 세출

구 분	2023외계연도	2022외계연도	전년대비 증감액	주요 집행 내용
보수	20,536,365천원	23,130,055천원	▼2,601,890천원	가)교원보수 14,118,190천원, 내)직원보수 8,418,175천원
권리운영비	5,166,873천원	6,381,542천원	▼1,214,669천원	가)시설관리비 2,156,970천원, 내)임원관리비 1,236,413천원, 대)운영비 1,773,460천원
연구약생경비	16,139,685천원	18,215,474천원	▼2,075,789천원	가)연구비 40,999천원, 내)학생경비 15,820,791천원, 대)입시관리비 177,894천원
교육 외 비용	89,820천원	157,704천원	▼67,884천원	가)집소실 89,820천원
투자와 기타자산지급	1,466,844천원	758,713천원	▲708,131천원	가)임의기금적립 1,466,844천원
고정자산매입 지출	8,283,133천원	6,752,256천원	▲1,530,877천원	가)건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유형고정자산 구입 8,283,133천원
미사용 자기 이월지급	1,016,244천원	1,295,257천원	▼279,013천원	가)유동자금 9,087,952천원, 내)선급법인세, 미수금 등 기타유동자산 626,807천원, 대)예수금 264,814천원, 라)선수금 8,379,611천원, 미)기타유동부채 233,890천원
증액	52,698,967천원	56,699,006천원	▼4,000,039천원	가)교비회계 51,314,482천원, 내)약교기입회계 1,635,484천원 (내부거래 251,000천원)

의 장 김희		부의장 한		평의원 김	
-----------	--	----------	--	----------	--

[의 장] 발표가 끝난 뒤 각 의원에게 안건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나 일정 시간이 흘러도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어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자문을 마친다고 말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말한다.

[총무팀장] 유휴 교육용 시설 임대(안)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임대가 가능한 미사용 교육용 시설을 임대하여 불필요한 세금납부와 관리비 부가 등 재정 부담 요인을 줄이고자 함 ○ 천우빌딩 6층은 공실로 교육용으로 사용이 어려워 임대하여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p>□ 임대 대상 건물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68) ○ 면적 : <p>□ 천우빌딩 6층 임대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 기관명 : ○ 면적 : 천우빌딩 (임대면적 n², 전유 370.043m², 공유104.339m²) ○ 임대기간 : 부터 ~ 실(6년) ※ 단, 독립 지연 시 연장 가능 ○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원(VAT포함, 공동 관리비 포함) ○ 기타 협력사항 : 본 대학 임상병리학과와 검사실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추진

[의 장] 발표가 끝난 뒤 각 의원에게 안건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한다.

[평의원 최] 현재 천우빌딩에서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한지 묻다.

[총무팀장] 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층은 2층부터 6층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 그렇다면 그 중에서 6층만 일단 임대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지 묻다.

[총무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게 맞다고 말한다.

[평의원 최] 임대를 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다.

[총무팀장] 2023년 10월경 교육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여 현재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 교육부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묻다.

[총무팀장] 교육부의 허가 등은 필요하지 않고 관할기관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송] 현재 6층은 이안요양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다.

[총무팀장] 현재 이안요양원은 폐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절차는 6월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10월에 임대하는 방안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다.

의 장		부의장		평의원	
김		한		김	

[의 장] 일정시간이 흐른 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네 번째 안건을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 각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평의원] 의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재청하다.

[의 장] 마지막 안건에 대해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함을 선포하고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학칙 개정(안)은 제28조와 제29조 및 제85조의 내용을 심의한 의견대로 수정하여 적용하고 유휴 교육용 시설 임대(안)은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며 2024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과 2023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은 특별한 자문내용은 없고 규정과 법률에 맞게 편성·운영·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부의장 및 평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다.(16시 45분 산회)

2024년 4월 9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김

부의장 한 민

평의원 최

평의원 염

평의원 최

평의원 송

평의원 안

평의원 김

평의원 유

평의원 김

평의원 박